

(사)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

지역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25. 7. 25.

제1조(목적)

- 이 규정은 (사)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지역위원회는 (사)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(이하 '본부'라 한다.)의 산하 조직으로 지역에 소재한 회원단체들과 지역의 어린이, 청소년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이다.

제2조(구성)

- 지역위원회는 본부 이사장 및 광역시, 도 지역 권역별 지회장 외 본부추천 3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지역위원회의 의장은 본부 이사장이 맡는다.
- 지역위원회 회의는 지회장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시 부지회장의 대리참석이 가능하다.

제3조(임기)

본부 임원의 임기와 함께하며, 회원관리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소집)

정기 회의는 연 2회(3월, 10월)를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 소집할 수 있으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부 이사회 이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권리와 의무)

- 모든 위원은 지역의 전반 활동을 이해하고,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한다.
- 지역대표위원은 지역 이사에 준하는 자격으로 선택에 따라 본부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은 없다.
-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소통과 협력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각 지역의 필요사항을 점검하고,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발 빠른 상생의 발전을 도모한다.

부 칙

제6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부 정관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.

제7조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.